

1. 지적유형 : 보험료 할인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

2. 제재대상사실

- 2007.10.12. AA과 BB건물(4개층)에 대한 ○○(화재손해담보) 계약 체결 시 동 건물이 층별로 방화구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건물 내 영위업종 중 가장 높은 요율인 “시장”에 해당되는 요율을 전체 층에 적용하여야 하는데도,

방화구획이 설정된 것처럼 간주하여 층별로 요율을 각각 적용함으로써 6,580천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한 사실

3. 제제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과징금 600만원 부과
임 원	-
직 원	-

< 관련법규 >

1. 「보험업법」 제98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)

※ <붙임> 과징금 산출내역 참조

<붙임 1>

과징금 부과내역

□ 산출기준

- 법정부과한도액 :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(이하 “기준금액”이라 함)의 100분의 50(「보험업법」 제196조 제1항 제1호)
- 기본과징금 : 법정부과한도액에 단계별 산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 (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별표2)
- 기본과징금의 조정 :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한 경우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가중 가능(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별표2)

□ 기본과징금 : 4,386,532원

- 기준금액 : 15,065,900원 (연간수입보험료)
- 법정부과한도액 : 7,532,950원(연간수입보험료의 50%)
- 과징금부과금액 산출식

<u>기준금액</u>	<u>법정최고부과비율</u>	<u>기본부과율</u>	<u>산정금액</u>
① 10,000,000원	× 50/100	× 7/10	= 3,500,000원
② 5,065,900원	× 50/100	× 7/20	= 886,532원
15,065,900원			4,386,532원

□ 기본과징금의 조정 : 2,193,268원

- 6,579,800원(특별이익 제공금액) - 4,386,532원(기본과징금) = 2,193,268원

※ 가중사유 :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가중

□ 부과 과징금 : 6백만원(백만원 미만 절사)

- 4,386,532원(기본과징금) + 2,193,268원(조정금액) = 6,579,800원